

【 19 】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2. 11. 28

제 출 자 양 주 군 수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분리로 리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자연마을과 다른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 설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리개발위원회의 내실 및 효율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리개발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- 다.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함(안 제3조제2항)
- 라. 예비군 리대장을 삭제함(안 제4조제3항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의 추천에”를 “리장의 추천에”로, 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”를 “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 추천에”를 “리장 추천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의 추천에”를 “리장의 추천에”로, 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”를 “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 추천에”를 “리장 추천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제2조(기능) (생략) 1.~5. (생략) <u>6.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</u> <u>7. (생략)</u>	제2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6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리장 및 예비군</u> <u>리대장의 추천에</u>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 한 <u>15인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----- <u>리장의 추천에</u> ----- -- <u>15인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며, 노인 <u>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청년</u> <u>회장을</u>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공 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가 대행할 수 있다. ②----- <u>감사</u> <u>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.</u>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<u>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</u> <u>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.</u>	③~⑥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등의 임기) ①~②(생략) ③리 개발위원의 전출,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리장 및 예비군 리대장 추</u> <u>천에</u> 의하여 읍·면장이 보궐위촉도록 한다.	제4조(위원등의 임기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리장 추천에</u> ----- ----- -----

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개정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분리로 리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자연마을과 다른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 설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리개발위원회의 내실 및 효율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리개발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- 다.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함(안 제3조제2항)
- 라. 예비군 리대장을 삭제함(안 제4조제3항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 결과 : 2002. 10. 14 ~ 11. 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 없음.